#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617 발의연월일: 2025. 4. 7.

발 의 자 : 김 윤 · 위성곤 · 윤종오

김남근 · 신영대 · 이수진

김동아 • 이정문 • 임미애

박해철 · 김기표 · 김교흥

박희승 • 권향엽 • 강선우

문대림 • 한병도 • 임광현

박지원 • 김병기 • 전형희

송옥주·김성환 의원

(23인)

###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재난으로 인한 사망자·실종자·부상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재난 예방을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과학기술 등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이 신속하게 대피하지 못해 피해가 더욱 크게 발생하며, 재난 구호 조치 외에도 후유증 치료나 간병, 보조장구 사용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명시할 필요가 있음. 또한, 재난 피해자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체계적인 데이터 확보와 연구에 한계가 있음.

이에 재난 발생 시 안전취약계층의 대피를 돕는 대피 도우미 제도를 신설하고, 마을방송을 활용한 재난 경보 시스템, 대피장소 사전 안내 및 숙지 등 실질적인 대피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임. 아울러 의료비지원을 명시하여 재난 피해자의 안정적인 회복을 돕고, 재난 종료이후에도 재난 피해자의 치료를 위한 실태조사와 장기추적조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8조의2, 제40조, 제65조의3, 제66조, 제71조의3, 제74조의3 및 제74조의6).

### 주요내용

- 가. 재난의 신속한 전파와 대피를 위해 읍·면·동의 이장이나 통장이 마을방송을 통해 재난 대피 안내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의2 제3항제6호 신설).
- 나. 사전에 재난 대피장소를 지정한 경우, 주민들에게 대피장소의 위치, 접근 경로를 사전에 안내하여 숙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제 2항 신설).
- 다. 재난 피해자의 치료를 전담하는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여 재난 종료 이후에도 피해자의 치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65조의3 신설).

- 라. 재난으로 인한 부상의 치료 및 장기적인 후유증, 간병, 보조장구 사용에 소요되는 실질적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6조 제3항제9호 신설).
- 마. 재난 피해자 등의 신체·심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재난 피해자 등의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재난이 종료된 이후에도 지속적인 치료를 위해 장기추적 조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71조의3 신설).
- 바. 재난 발생 시 거동이 불편하여 신속한 대피가 불가능한 노인·장애인과 같은 안전 취약계층을 위해 대피 도우미 인력을 사전에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74조의6 신설).

법률 제 호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2제3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 읍·면·동의 이장 및 통장의 재난 대피 안내 방송 제40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 ② 제1항 후단에 따라 사전에 대피장소를 지정한 경우에는 주민들에게 사전에 안내하여 해당 장소를 숙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65조의3(재난피해자등의 주치의)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입은 사람과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사람(이하 "재난피해자등"이라 한다)의 치료 및 건강 상담을 전담하는 주치의 제도(이하 "재난피해자등의 주치의 제도"라 한다)를 시행할 수 있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의료법」 제28조에 따른 의사회 등 의료인 단체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피해자등의 주 치의 제도를 함께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난피해자등의 주치의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재난피해자등의 주치의 제도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 지원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제3항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재난피해자등의 치료 및 간병 또는 보조장구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제7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71조의3(재난피해자등에 관한 실태조사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 난피해자등의 신체·심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재난피해자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이 종료된 이후 재난피해자등의 지속적인 치료를 위하여 치료 및 신체·심리 상태에 관한 정보에 대한 장기 추적 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2항에 따른 장기추적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2항에 따른 장기추적 조사의 내용 및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난으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입은 사람과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사람(이하 "재난피해자등"이라 한다)에"를 "재난피해자등에"로 한다. 제74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4조의6(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인력 확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발생 시 안전취약계층의 신속한 대피를 위하여 대피 도우미 등 지원인력을 사전에 지정·운영하고,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신속한 대피 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025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료비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시행 이후 발생한 재난피해자등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8조의2(재난 예보・경보체계	제38조의2(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운영 등) ①・② (생	구축・운영 등) ①・② (현행과		
략)	같음)		
③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3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재			
난에 관한 예보・경보・통지나			
응급조치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			
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u>6. 읍·면·동의 이장 및 통장</u>		
	의 재난 대피 안내 방송		
④ ~ ⑫ (생 략)	④ ~ ⑫ (현행과 같음)		
제40조(대피명령) ① (생 략)	제40조(대피명령) ① (현행과 같		
	음)		
<u>&lt;신 설&gt;</u>	② 제1항 후단에 따라 사전에		
	대피장소를 지정한 경우에는		
	주민들에게 사전에 안내하여		
	해당 장소를 숙지할 수 있도록		
	<u>하여야 한다.</u>		
<u>②</u> (생 략)	<u>③</u> (현행 제2항과 같음)		
<u>&lt;신 설&gt;</u>	제65조의3(재난피해자등의 주치		

의)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는 재난으로 인하여 생명・신 체에 대한 피해를 입은 사람과 생명 • 신체에 대한 피해 발생 이 우려되는 사람(이하 "재난 피해자등"이라 한다)의 치료 및 건강 상담을 전담하는 주치 의 제도(이하 "재난피해자등의 주치의 제도"라 한다)를 시행 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의료법」 제28조에 따른 의 사회 등 의료인 단체와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 피해자등의 주치의 제도를 함 께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 난피해자등의 주치의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재난피해자등의 주치의 제 도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 지원범위 등에 필요한 사 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 조 등의 지원) ① · ② (현행과

조 등의 지원) ① • ② (생 략)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 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 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 및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하 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같 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 을 지급하거나, 제3조제1호나목 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 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 다.

1. ~ 8. (생 략) <u><신 설></u>

9. (생략) ④ ~⑦ (생략) <신 설>

같음)
③
<u>.</u>
1. ~ 8. (현행과 같음)
9. 재난피해자등의 치료 및 간
병 또는 보조장구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10. (현행 제9호와 같음)
<u>4</u> ~ ⑦ (현행과 같음)
제71조의3(재난피해자등에 관한
실태조사 등) ① 행정안전부장
<u>관은 재난피해자등의 신체·심</u>
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재

난피해자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이 종료된 이후 재난피해자등의 지속적인 치료를 위하여 치료 및 신체·심리 상태에 관한 정 보에 대한 장기 추적 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 책임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2항에 따 른 장기추적조사에 필요한 자 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 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 다.
-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2항에 따른 장기추적 조사의 내용 및 방법, 절차 등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제74조의3(정보 제공 요청 등) ① 제74조의3(정보 제공 요청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제14조제1항에 따른 중앙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본부장을 말한 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 청장(제16조제1항에 따른 시・ 도대책본부 또는 시・군・구대 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본부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재난의 예방・ 대비와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 하여 필요한 경우 재난으로 인 하여 생명 • 신체에 대한 피해 를 입은 사람과 생명 · 신체에 대한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사 람(이하 "재난피해자등"이라 한 다)에 대한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 중앙 행정기관(그 소속기관 및 책임 운영기관을 포함한다)의 장, 지 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전기통 신사업법 1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그 밖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

<u> </u>

라야 한다.

1. • 2. (생략)

② ~ ⑩ (생 략)

<신 설>

\_\_\_\_\_

1. • 2. (현행과 같음)

② ~ ⑩ (현행과 같음)

제74조의6(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인력 확보)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는 재난 발생 시 안전 취약계층의 신속한 대피를 위하여 대피 도우미 등 지원인력을 사전에 지정·운영하고, 안 전취약계층에 대한 신속한 대피 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한다.